		• 혁신금융 • 포용금융				
금융위원회	보도	배포 후 즉시		배포	2019.8.20.(화)	• 신뢰금융
책 임 자	금융위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(02-2100-2684)		담 당 자		차 영 호 사무관 (02-2100-2683)	

제 목 :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겠습니다.

- 「공인회계사법 시행령」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
- ② 공인회계사의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

1. 개요

- □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* 위원수 확대, 공인회계사의 비자발적 주식 취득시 직무제한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을 반영한
 - *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, 시험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, 기타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(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)
 - 「공인회계사법 시행령」개정안이 금일(~19.8.20일) 국무회의를 통과

2. 주요 내용

- ① 궁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개선(안 제9조의2)
 - (현행)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他자격사 위원회와 비교할 때, 위원수가 작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
 - (개선) 他자격사 수준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 확대(7명→11명) 및 당연직 위원의 비중도 축소(43%→36%)
 - * (현행) 당연직 위원 3명, 민간 위원 4명 → (개정후) 당연직 위원 4명, 민간 위원 7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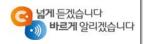
< 자격제도심의위원회 개선내용 >

	현 행		개 선
인원	위원장 포함 7명		위원장 포함 11명
당연직 위원	① 금융위 부위원장(위원장) ②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	\	1 금융위 부위원장(위원장)2 금융위 고위공무원 2명3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1명
민간 위원	 ③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명 ④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⑤ 시민단체 추천 1명 ⑥ 회계제도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명 		 ④ 공인회계사회장 추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1명 ⑤ 회계기준원장 추천 1명 ⑥ 상장회사협의회회장 추천 1명 ⑥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추천 1명 ⑥ 회계 또는 회계감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년이상 경력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분야 대학교수 3명 (2명 순증)

- ②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 개선(안 제14조)
 - (현행) 공인회계사가 **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취득**시 **직무 제한 규정**에 따라 법에 **위반**되는 문제가 있음
 - (개선) 공인회계사가 감사기간 중 회사 합병, 주식 상속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주식취득시에도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처분하면 직무제한 사유의 예외(감사참여 가능)로 인정
- 3. 시행일정 및 기대 효과
- □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
- □ **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** 등을 대변할 수 있는 **위원들의 추가 선임으로**,
 - **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**하여 위원회의 **대표성** 및 **결정**에 대한 **수용성**이 **제고**될 것으로 기대



 ※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 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

"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"